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

우 120-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-1번지 / 전화 (02) 3907-321~9 / FAX 363-5258

문서번호 과장 58440-1787
 시정일자 1995. 10.
 (경유) (제 1. 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[Handwritten Signature]
본부장	전 결	
차 장		
업무부장	[Handwritten Signature]	법무담당관 심사필
과장/과장	[Handwritten Signature]	기안: 박병만 [Handwritten Signature]

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합니다.

첨부 : 1. 공고문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서울특별시장
 참조 공보관

원본대조필	1995년 10월 19일
	직명: [Handwritten Signature]
	성명: 박병만 [Handwritten Signature]

제목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공고문안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1-1

52

공 고 (안)

공고번호	1995.10.18	제 291 호
담당자	김기영	부서
1/1	김기영	김기영

서울특별시공고 제 291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5 년 10 월 일

본부장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취지

- 가. 상수도사업 재정형편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수도요금과 수전당 실소요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급수관손료, 시설분담금을 조정하여 결손분을 일부 보전하고 수질개선, 생산공급시설확충, 노후관 개량, 상수원 보전관리사업등의 재원을 마련코자 하며,
- 나. 특히, 이번 급수조례개정은 상수도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절수의식을 향상시켜 가뭄등 재해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원본대조필	1995년 10월 19일
	작-김기영 26344
	성-10월 18일

053

63

가. 급수사용료 요율조정

구분 업종	1개월 기본요금		초 과 사 용 료	
	기 본 수 량 (세제곱미터)	기본요금 (원)	사 용 구 분 (세제곱미터)	세제곱미터당 단가(원)
가 정 용	10	1,200	11~ 20	180
			21~ 30	220
			31~ 40	460
			41~ 50	540
			51 이상	770
영업 1종	20	3,740	21~ 50	400
			51~ 100	480
			101~ 300	510
			301 이상	580
영업 2종	30	12,400	31~ 50	520
			51~ 100	630
			101~ 200	760
			201~ 300	890
			301 이상	980
욕탕 1종	500	96,910	501~1000	230
			1001~2000	260
			2001~3000	320
			3001 이상	350
욕탕 2종	200	115,170	201~ 500	960
			501~1000	1,070
			1001~2000	1,170
			2001~3000	1,210
			3001 이상	1,240
공 공 용	20	3,400	21~ 50	300
			51~ 100	360
			101~ 300	400
			301 이상	450

본부장

1985년 10월 19일
 직명 기밀 행정국서서
 성명 박정민

2

054

54

나. 급수관손료 조정

구 경 별	요 금	비 고
13 m/m	1개월 440원	
20 m/m	1개월 840원	
25 m/m	1개월 1,160원	
40 m/m	1개월 3,130원	
50 m/m	1개월 5,430원	
75 m/m	1개월 7,760원	
100 m/m	1개월 12,200원	
150 m/m	1개월 24,400원	
200 m/m	1개월 37,600원	
250 m/m	1개월 56,600원	
300 m/m	1개월 95,800원	
350 m/m	1개월 133,000원	
400 m/m	1개월 143,000원	

1995 10 19
본부장

※ 구경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한다.

원본대조필
1995년 10월 19일
직무 기안장 김주식
상무 박경민

3

055

55

다. 시설분담금 조정

구	분	시 설 분 담 금 액	
		신 설	개 조
내경	13 m/m	185,000 원	개조시에는 신·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정수한다.
내경	20 m/m	538,000 원	
내경	25 m/m	960,000 원	
내경	40 m/m	3,230,000 원	
내경	50 m/m	4,660,000 원	
내경	75 m/m	9,680,000 원	
내경	100 m/m	16,500,000 원	
내경	150 m/m	35,900,000 원	
내경	200 m/m	51,000,000 원	
내경	250 m/m	68,900,000 원	
내경	300 m/m	81,000,000 원	
내경	350 m/m	110,300,000 원	
내경	400 m/m	118,250,000 원	

1335 13 13
본부장

※ 내경구분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한다.

원본외조필
1995년 10월 19 일
작의 기안장장 주서
184 184 184

056

4

F6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(참조 :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전화: 3907~321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등

1995 10 19
본부장

원 본 대 조 준 필	1995년 10월 19일
	직무 기안서작성부서 103 103부서

51